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김형일*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Legaliza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Press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Hyung-il Kim*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Far East University*

요약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디지털 미디어, 언론자유, 디지털 프라이버시

Abstract With the advent of digital media environment, distribution way of information changes,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However,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and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might be infringed. Thus, the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ules. Firs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about social personality cannot be applied to. Secon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old news article over the internet repeatedly distribution as the new damage is generating. Because old news article is a historical record,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not be applied. Thus, appropriate for digital media environment must find new ways.

Key Words :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 information, digital media, freedom of press, digital privacy

Received 29 July 2013, Revised 21 August 2013

Accepted 20 Sept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Hyung-il Kim(Far East University)

Email: john815@kd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문제 제기

2013년 2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존 법률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권리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란 말 그대로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새로운 권리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도래로 정보의 유통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미디어 중심의 시대에는 어떤 정보는 유통기한 내지 나름의 유효기간이 존재했었다.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수 있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정보를 다시 보려면 애초 정보를 생산한 언론사나 정보가 보관된 도서관을 방문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생산된 정보의 유통기한은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본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정보가 무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서 대부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보관된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필요할 경우 누구나 쉽게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도 강력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심지어 전에는 몰랐던 내용까지 관련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 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 등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 이상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보장한 것이 바로 2012년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규정안(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다[1]. 이 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즉 잊혀질 권리의 적용대상은 자신이 게재한 개인정보는 물론 이를 링크 및 복사하는 경우, 심지어 제3자가 게재한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제17조). 이렇게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활용’에 치우쳤던 정책방향이나 시장에서의 관행을 ‘보호’ 쪽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 디지털 시대 초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권리들이 정보의 정확한 처리 등 주로 정보의 저장과 기록·수집 등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제는 정보의 삭제나 망각 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적 권리가 바로 잊혀질 권리인 것이다[3].

어찌 보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시대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개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잊혀질 권리로 인해 언론자유를 비롯한 또 다른 중요한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잊혀질 권리 도입의 정당화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지나간 언론기사의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 유통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보도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헌법상의 또 다른 기본권인 언론자유 내지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가 아무리 중요한 보호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출은 불가피한 환경에서 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도 무시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른 헌법

적 가치와 충돌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EU의 규정안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공공보건 부문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역사·통계·과학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법적 목적에 적합하고 타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 신상털기나 특정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4]. 이런 주장들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법제화만 이루어지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는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예컨대, 잊혀질 권리의 적용범위, 즉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공개한 내용도 있고 본인의 동의하에 공개되는 정보도 있다. 또한 언론보도를 비롯하여 제3자가 만들어낸 정보 가운데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기도 한다. 또 이런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복제·링크되기도 하고 검색과정에서 무관한 정보들이 서로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가치를 갖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잊혀질 권리가 사실상 관련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6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즉 잊혀질 권리의 적용대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6호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정의내리고 있다.

위 두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정보의 취득목적이나 본인의 동의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정보의 작성주체가 본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유형에 따라 보호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이른바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는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 또 개인정보지만 일반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공적 정보’와 그렇지 않은 ‘사적 정보’의 보호가치도 다르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형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가 언론자유와 갖는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개인에 대한 묘사, 서술, 평가, 의견, 언론보도 등을 의미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information concerning a person)를 구분하고자 한다[2].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적용되는 권리 개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구별되는 일종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 권리도 현재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는 인정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심판사건에서 “사회화

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지문날인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제17조8 등 위헌심판사건에서도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그러나 헌재가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이를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지 않는 개인 관련 정보가 검색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처럼 이용자를 위한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개인 관련 정보가 모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및 통신기술의 변화 및 발전을 고려한다면 개인정보의 활용을 전제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고,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너무 개인정보의 ‘보호’에 집착해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을 경우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2]. 특히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까지 잊혀질 권리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정보의 유형과 권리의 성격에 따른 보호 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衡量하여 적절한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3. 언론보도와 잊혀질 권리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 가운데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익한 정보도 있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하거나 유통시키는 개인정보의 경우 보

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언론이 환경에 대한 감시와 사회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개인정보 노출이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로 인한 개인적 손실보다 공익적인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기사화되었던 내용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언론사 자체적으로든 포털을 통해서든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보관되고 있다.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뒤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 인물을 검색하다보면 또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런 기사들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과거의 맥락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새로운 정보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네티즌들의 생각이나 추측성 의견일 뿐임에도 기사와 동일한 공신력을 갖고 확산된다. 또 이런 내용들이 해당 언론사나 개인의 동의 없이도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 개인이 관리하는 공간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게시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유통실태도 파악하기 어렵다[6].

이렇게 과거의 내용이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로 인한 언론보도의 경우 반복적인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보도내용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반복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있었던 기사삭제 요구소송은 자신에 대한 과거 기사가 구글(google)에서 계속 검색되어 피해를 입은 90여 명이 제기한 것이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2011년 3월 이들의 이름이 포함된 80여 건의 기사를 구글 기사색인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7]. 반복적인 검색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잊혀질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1990년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두 사람이 위키피디아(Wikipedi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우였던 사망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들의 이름이 함께 나오므로

이를 삭제해달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 취지이다.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의 반복적 유통은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5]. 우리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적 처벌을 마치거나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재판의 실효와 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8, 9]. 법적으로 아무리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나면 법률에 따라 사면과 복권이 되고 공문서상의 각종 기록에서도 관련 내용이 삭제된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전과자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형의 소멸 및 사면·복권이 이뤄져 공문서상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를 다룬 언론기사가 인터넷상에서 계속 검색된다면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도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존의 절차로도 해결될 수 없다. 예컨대, 우리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에서 수용되는 ‘반론권’이나 ‘고침’, ‘바로잡음’ 등의 언론피해 구제절차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이다[10]. 그렇다고 해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여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보도될 당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언론기사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 청구 시한을 언론보도 이후 6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언론보도에 대해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역사적 기록은 기록 자체의 완전성 여부를 떠나 고유의 기록가치를 갖는다. 제한된 사료와 증거

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역사적 기록은 추후에 다른 증거가 나타나고 새로운 해석이 이뤄져 애초의 기록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불완전한 과거 기록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고유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의 언론기사도 시대를 기록한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선 안 된다. 더욱이 그 기사가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진실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없을 경우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대법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와 관련하여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즉,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기록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관심도가 저하되면서 보도의 공익성은 약화되지만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지 않는다.

4.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검색기술의 발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알리고 싶지 않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아직 잊혀질 권리의 개념 자체도 뚜렷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누구나 헌법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프라이버시(privacy) 개념의 역사적 형

성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프라이버시는 본래부터 존재하던 권리가 아니라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 시대는 신문이 대중화하면서 온갖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소위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 극성을 부리던 때이다. 또한 사진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1890년 워렌과 브랜다이스(Warren & Brandeis)가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11]. 이들은 기술과 사업모델의 발전으로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프라이버시권이 처음부터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법률안이 최초로 나온 것은 1903년 뉴욕주 의회였고, 1905년 조지아주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통법(common law)상 불법행위로 인정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12].

이처럼 프라이버시가 법제화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양상과 비슷해 보인다[5]. 첫째,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다. 1960년 프로서(Prosser)는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논문 발표 이후 70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내려진 3백여 건의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13]. 한 마디로 프라이버시의 모든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방식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방식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14]. 프라이버시라는 동일한 표현 아래 일군의 불법행위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난 것이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도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적용범위에 대한 논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프라이버시권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수용하여 형성된 권리이다. 워렌과 브랜다이스가 처음 이 권리에 주목한 것은 19세기 말 급성장한 신문산업과 보급형 사진기의 등장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새로운 권익 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잊혀질 권리라는 표현으로 제

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프라이버시는 역사와 경험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와 시대에 따라 프라이버시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유럽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비취지는 자기 모습을 보장하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평가의 훼손을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식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은 국가에 의해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있다. 유럽과 달리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식 또한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이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미국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19세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디지털 시대로 연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의 모든 기록과 정보가 무한 유통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개념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지금처럼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기까지 오랜 동안의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도 지나치게 대중추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적용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맺는 말

오늘날은 전 세계가 하나의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라 불리는 거대한 정보의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이 거대한 정보의 덩어리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 기관, 심지어 하나의 국가에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각종 정보기기들이 연결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는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로 재가공 되고 개인과 기업, 사회와 국가

가 이를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가능한 시대를 기존의 관점에서 규율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이를 기존의 법률적 관점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아직도 생산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의 법률구조로 해결할 수 없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에 엄매이지 않는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우선이나 언론자유가 더 가치 있는 보호대상이나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이 두 가지 상충하는 법익을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REFERENCES

[1]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document/review2012/com_2012_11_en.pdf

[2] Sung-Gi, Hwang, Harmoniza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5(2), 20-36, 2012

[3] Yoon Young, Mi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Law Review*, 63, 287-316, 2011

[4] Segye-ilbo, 2013. 4. 8; Chosun-ilbo, 2013. 6. 20.

[5] Jea-wan, Moon, The Korean Way of Balancing Two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Know, *Journal of Press & Law*, 10(2), 1-37, 2011

[6] Bon-Kwon, Koo, Harm and Measure Caused by Unerasable Old News Articles on the Internet, 2007

[7] New York Times, 2011. 8. 9

[8] Kyeong-Je, Kim, Review on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Jurisdiction Administration*, 45(3), 24-37, 2004

[9] Seung-Dae, Kim,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Korean Double Jeopardy Clause. *Korean Public Law Review*, 35(4), 377-404, 2007

[10] Jae-Jin, Lee & Bon-Kwon, Koo, Toward the Proper Resolution of the Problems Caused by Unerasable Old News Articles on the Interne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2(3), 172-212, 2008

[11] Warren, S. & L.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1890

[12] *R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Co.*, 50 S. E. 68(Ga. 1905)

[13] Prosser, D. W.,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383, 1960

[14] Solove, D. J., Conceptualizing Privacy, 90 *California. Law Review*, 1087, 200

김형일(Kim, Hyung-il)



- 1990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언론학 전공)
- 2002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미디어법제, 미디어경영, 공공PR
- E-Mail : john815@kdu.ac.kr